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11585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2. C 주식회사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C주식회사에게 42,165,589원, 원고 A주식회사에게 40,512,0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2. 19.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F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공사계약금액 6,398,700,000원, 공사기간 2018. 2. 19.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기성금은 ‘월 1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100%로 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보험자를 원고들로 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에게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게 보증을 제공한 피고에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토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400,300,515원 중 91,000,000원은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대지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고, 82,677,625원은 노무자, 장비기사들의 식대 및 간식비로 이는 대지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노무자, 장비기사들의 식대 및 간식 비용 합계 82,677,625원을 대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후단은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해석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개별 약정으로 정한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해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약관법 제4조).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7, 8,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는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2. 1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들, 보험가입금액을 4억 원, 건설 하도급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대지급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것을 보증 내용으로 하며, 특기사항으로 ‘피보험자가 하수급인에게 대지급하는 기성금의 대지급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대하여 담보함’이라고 정한 사실, 원고들은 2018. 9.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타절기준일을 2018. 8. 31.로 하여 타절정산금액을 2,863,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2018. 9. 19.까지 소외 회사에게 총 3,083,682,313원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금액을 원고는 2018. 9. 21.부터 2018. 11. 16.까지 지급한 사실(갑8)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결국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이미 초과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또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상 원고들이 이미 기성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알면서도 재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을 대위변제한 경우까지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는 점, 더군다나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단20927 추심금 사건에서 위 3,083,682,313원 이외에 소외 회사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을4), 2018. 9. 21.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5차례에 걸쳐 82,677,625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들 스스로가 의무 없는
일을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식대 및 간식비의 추가 지급금까지 담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재